

# 重記를 통해 본 호남지역 郡·縣의 기록물 분석

An Analysis of the Records in Gun(郡) and Hyeon(縣)  
of Honam through Junggi(重記)

진 유 라 (Jin, Yu-Ra)\*

## ◁ 목 차 ▷

1. 머리말	3.3 『光陽縣各房都重記』
2. 호남지역의 重記	3.4 『高山縣都重記』
3. 중기의 구성과 수록 기록물 분석	3.5 『長水縣重記』
3.1 『順天郡各掌重記』	4. 기록물의 類別 비교
3.2 『同福縣各庫物種重記』	5. 맺음말
	<참고문헌>

## < 초 록 >

이 연구는 조선 후기 호남지역의 郡과 縣에서 작성된 重記를 원 자료로 삼아 각 중기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도 書冊, 文書, 冊板을 중심으로 수량 및 보관, 관리 상태를 파악하여 지방 관아에 파견된 수령이 관할 지역의 업무와 통치를 위해 참고하거나 관리했던 기록물의 서책 유형을 분석한 것으로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존하는 호남지역의 중기 22종 가운데 順天郡과 同福縣, 光陽縣, 高山縣, 長水縣에서 작성된 5종의 중기에서 서책 550종, 문서 293종, 책판 3종이 확인되었다. 서책은 經書類가 가장 많았으며, 正法類, 儒家類, 文集類, 詔令類 순이다. 문서는 호구장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量案, 節目, 官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산현에서 작성된 중기에서는 문집류의 책판이 수록되어 있었다.

군·현에서 작성된 중기에 수록된 서책을 대상으로 동일한 서명을 파악해 본 결과 93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論語』, 『孟子』, 『書傳』, 『詩傳』, 『周易』, 『春秋』의 經書類 서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순천, 동복, 광양, 고산, 장수지역에 공통적으로 비치된 서책은 『小學』과 『欽恤典則』으로 나타났다. 『소학』은 鄕校나 禮房, 『흠휼전칙』은 刑房에 비치되어 필수 지침서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要語: 기록물, 호남, 군·현, 중기, 서책, 문서, 책판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swallowyr@nate.com)

접수일: 2015년 9월 2일 최초심사일: 2015년 9월 6일 심사완료일: 2015년 9월 20일

<ABSTRACT>

This Study was, by comprehending numbers, storage and handling condition of Books, Document, Printing blocks out of other contents embedded in each Junggi retouched based on Junggi published at Gun(郡) and Hyeon(縣) in Honam province, set for an analysis on patterns of Books of records which a governor dispatched to regional office referred to or managed for his governance.

Among existing 22 Junggis of Honam province, 550 kinds of Books, 293 kinds of Document and 3 kinds of Printing blocks were identified from 5 kinds of Junggi formed at Suncheongun(順天郡), Dongbuckhyeon(同福縣), Gwangyanghyeon(光陽縣), Gosanhyeon(高山縣) and Jangsuhyeon(長水縣). Kyeongseoru accounts for most of Books, followed by Jeongbeobru, Yugaru, Munjibru and Jolyeongru.

Hogujangjeok(戶口帳籍) accounts for most of Document, followed by Yangan(量案), Jeolmok(節目) and Kwanan(官案). Printing blocks a kind of Munjibru is embedded in Junggi formed at Gosanhyen.

Having grasped identical signatures aimed at Books embedded in Junggi published at Gun and Hyeon, we understand there is 93 kinds of it in total. In addition, we come to know Books 『Nonuh(論語)』, 『Maengja(孟子)』, 『Seojeon(書傳)』, 『Sijeon(詩傳)』, 『Jyuek(周易)』, 『Chunchu(春秋)』 kind of Kyeongseoru is a great part of it. Books displayed at Suncheon, Dongbuck, Gwangyang, Gosan and Jangsu was confirmed as 『Sohak(小學)』 and 『Humhyuljeonchik(欽恤典則)』. It appeared that 『Sohak』 kept at Hyanggyo(鄉校) and Yebang(禮房), 『Humhyuljeonchik』 kept at Hyengbank(刑房) was used for the compulsory guide.

Key words: Records, Honam, Gun, Hyeon, Books, Junggi, Document, Printing blocks

## 1. 머리말

重記는 조선시대 관청에서 관리의 교체 시 주고 받는 인수인계서 또는 관청에 보관되고 있는 錢穀의 현황과 건물(各庫, 鄕校 등)은 물론 각 부서별로 보관된 物目을 점검하여 작성된 회계문서를 말한다. 현재 전하고 있는 지방행정 및 통치에 관련된 중기는 대부분 19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이를 통해 해당 관아의 규모나 물목의 현황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기에 수록된 물목 중에서도 서책이나 문서와 관련된 기록은 중기가 작성된 지역의 각 부서별 기록물의 현황과 수령<sup>1)</sup>에 의해 이루어진 지방통치 방법과 관련하여 미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중기와 관련된 연구는 회계제도사 분야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해유 및 해유문서’, ‘군비실태’ 등과 ‘監營·牧·縣’의 특정 지역에서 작성된 중기에 대하여 해제를 하거나 그 중기의 구성과 기술체제 및 부서별 물품현황 등을 단편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기의 수록내용 중 기록물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重記’ 연구의 외연을 넓히는 의미에서 호남지역의 군과 현에서 작성된 중기<sup>2)</sup> 자료를 대상으로 중기별 기술체제와 구성의 자료 분석과 더불어 세부기록 중에서도 書冊, 文書, 冊板과 관련된 기록을 뽑아내어 분석하였다. 또한 각 서책, 문서, 책판의 종수 및 유형을 살펴보고 군·현 조직 간의 기록물 類別 비교를 통해서 조선후기 호남지역에 파견된 수령이 해당 지역을 통치하는데 활용했거나 관리한 서책의 유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선시대 국왕의 임무를 분담하여 지방의 행정이나 조세, 교육, 군사 등의 업무를 통치했던 수령에 관해서는 수령의 임무나 역할, 인사구조, 수령제도 등의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원 자료인 ‘重記’나 ‘解由文書’ 그리고 ‘고문서’를 통해서도 수령의 지방통치 운영의 일면을 확인해 볼 수도 있다.

2) 호남지역에서 작성된 중기의 현황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과 국내 주요 대학도서관별 중기자료 검색 및 열람, 영남문화연구원에서 집성한 『重記』 I의 ‘중기목록’ 등을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 2. 호남지역의 重記

현재 전하고 있는 중기<sup>3)</sup>는 조선후기에 작성된 것으로 모두 149종인데, 본 연구의 대상 자료가 되는 호남지역에서 작성된 중기는 총 22종<sup>4)</sup>이 남아있다. 먼저 全羅監營에서 작성된 중기는 8종이 있는데, 南關鎮·威鳳山城, 南固山城, 湖南山城에 보관된 軍器의 현황에 대해 작성한 것과 完營의 各庫 및 巡檢穀, 紙筒의 물목을 정리한 중기가 있다. 또 전라남도 觀察府의 물품 현황과 全羅左水營의 錢穀布木 내역을 정리한 중기가 있다.

다음으로 茂朱府, 順天府와 羅州牧, 光州牧에서 작성된 중기가 있는데, 순천 지역은 『順天府各掌重記』(1890년)와 『順天郡各掌重記』(1989년)가 있다.<sup>5)</sup>

호남지방의 縣에서 작성된 중기는 6종이 있다. 務安·任實·同福·光陽·高山·長水縣에서 작성되었는데, 1726년(영조 2)에 務安縣과 1840년(헌종 6)에 任實縣에서 작성된 중기가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이다. 또 羅州의 靑巖驛에서 작성된 『靑巖道重記成冊』이 있다. <표 1>은 현재 전하고 있는 호남지역 중기의 작성연도와 소장기관을 정리한 것이다.

3) 실록, 승정원일기 등의 사료와 사전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중기의 의의를 종합해보면 重記는 각 지역의 官衙에서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 물목의 현존 수량이나 변동사항에 대해 일정한 기간마다 작성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회계장부이며, 또 관리의 교체나 轉職시에는 解由를 목적으로 인수인계서나 祿俸, 減俸, 관리의 성적 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된 문서라고 정의할 수 있다.

4) 22종 중에서 1840년 任實縣에서 작성된 『任實縣重記冊』은 『書誌學研究』 第57輯(2014)에 수록된 남권희의 『조선후기 전라도 임실현 <중기>에 수록된 기록자료 분석』에서 중기의 형태서지 및 체제, 기록물 관련 항목 분석 등의 선행연구가 있다. 또한 察訪이 다스렸던 靑巖道(靑巖驛)는 羅州牧에 설치되었던 驛院 중 하나에 속하지만 본 연구는 작성기관에 의거하여 기록물 분석을 진행하고자 함으로 청엄역의 물목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靑巖道重記成冊』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위의 2종을 제외한 5종의 중기를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본고의 4장 '기록물의 類別 비교'에서는 『임실현중기책』의 선행 연구를 보완한 후 종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5) 1895년 지방행정 조직의 개편으로 順天府에서 順天郡으로 改稱되었다.

重記를 통해 본 호남지역 郡·縣의 기록물 분석

<표 1> 호남지역에서 작성된 현존본 重記

중기명	작성기관	작성연도	소장처
南關鎮軍器重記	全羅監營	1887년 (高宗 24)	규장각
營庫重記			
威鳳山城軍器重記			
南固山城軍器重記			
巡檢穀重記			
湖南山城會外重記			
湖南紙筒重記			
全羅南道觀察府重記成冊	全羅南道	1904년 (光武 8)	장서각
全羅左水營所在錢穀布木重記蓄積磨勘成冊	全羅	1883년 (高宗 20)	규장각
全羅左水營所在錢穀布木重記蓄積磨勘成冊	左水營	1886년 (高宗 23)	
洪等重記	茂州府	1879년 (高宗 16)	규장각
順天府各掌重記	順天府	1890년 (光緒 16)	국립중앙도서관
羅州牧重記	羅州牧	1693년 (肅宗 19)	개인소장
光州牧重記	光州牧	1889년 (高宗 26)	장서각
務安縣重記	務安縣	1726년 (英祖 2)	개인소장
順天郡各掌重記	順天郡	1898년 (光武 2)	규장각
任實縣重記冊	任實縣	1840년 (憲宗 6)	국립중앙도서관
同福縣各庫物種重記	同福縣	1860년 (哲宗 11)	장서각
光陽縣各房都重記	光陽縣	1869년 (高宗 6)	규장각
高山縣都重記	高山縣	1880년 (高宗 17)	장서각
長水縣重記	長水縣	1888년 (高宗 25)	국립중앙도서관
靑巖道重記成冊	靑巖驛	1886년 (高宗 23)	규장각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22종의 호남지역 중기 자료 중에서도 군·현에서 작성된 『순천군각장중기』, 『동북현각고물중중기』, 『광양현각방도중기』, 『고산현도중기』, 『장수현중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중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서책, 문서, 책판의 기록물 분석을 통해서 수령들에 의해 이루어진 호남지역의 통치와 관리·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3. 중기의 구성과 수록 기록물 분석

#### 3.1 『順天郡各掌重記』

##### 3.1.1 중기의 구성

1898년 1월에 순천군에서 작성된 본 중기는 사무의 인계를 목적으로 각 부서에  
서 보관되어 있는 물품의 현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전체적인 기술체제로 하위항목인 26곳의 부서명을 2字 아래에 내려쓰고 있으  
며, 담당자의 성명은 기입되지 않았다. 별도로 ‘應出秩’이나 ‘雜物秩’ 등의 항목을  
두어 변동사항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리한 항목도 있다. 각 기관별로 장을 나누지  
않고 연결시켜 기입하는 방식이며, 물품 간의 이동과 변동 이력이 동일한 경우에  
는 가로줄로 긋고 묶은 다음 그 아래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고 있다.

鄉校		
資治通鑑	57卷	} 丙寅七月日 柳等內時上官入於內衙燒燼
續綱目	12卷	
勘亂錄	2卷	
震英粹語	1坐	
雅頌	2卷	
(中略)		
將官廳		
帳幕	10件 無	
鎗刀	31箇 旗摠 <sup>6)</sup> 出給	
鐵甲冑	13件 陸軍器上 無	
(中略)		
刑房		
太平簫	1雙	
孔雀羽	1雙	
(中略)		
戶籍		
辛酉式	} 各帳籍 1卷	
丙子式		
己卯式		

다음으로 『순천군각장중기』에 사용된 물품의 단위 표기법으로 일반적인 수량 단위인 ‘雙·坐·件·間·立·箇·面·柄·介’가 사용되었으며, 종이와 문서는 ‘束·張’, 서책은 ‘卷’이나 ‘冊’으로 표기되어 있다.

물품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無·破·破不用·革罷’로 기재되어 있으며, ‘正月以九月至乙未更張時勿施’이나 ‘金世旭失’과 같이 해당 연도와 성명을 써서 물품이 없어진 사유를 기입하고 있다.

물품의 보관처에 변동이 있으면 ‘官上·陸軍器上·本倉在·賑倉在·都務廳在·松光寺來·大興寺來’ 등으로 표기하였고, ‘庚申趙等內新備·癸亥朴等內重修, 軍兵處出給·丹陽洪等內新設’과 같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구비되고 설치된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文書櫃 一坐 具鎖金’과 같이 현재 물품의 수량과 보관 상태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표 2> 『順天郡各掌重記』의 부서별 물품 변동사항 예시

부서	물품	수량	변동 및 점검사항
鄉校	鎭燭台	20雙	內 4件 新備
	城隍堂 神室	3間	重修 庚午南洞成等內新備
將官廳	笏記	1件	無
	爐器	100坐	軍兵處出給
刑房	當官功過格	1卷	無
書廳	量庫	3間	丹陽洪等內新設
內工房	地圖板	1件	破不用
	中鼎	5坐	店主人 革罷
修理廳	斧子	1件	金世旭 失
	樓上庫鎖金	4件	官上

### 3.1.2 수록 기록물 분석

『순천군각장중기』는 1898년 순천군에서 작성되었다. 1896년에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13道制가 실시되면서 順天都護府에서 전라남도 순천군이 되었으며,

6) 旗摠은 조선후기 군사조직의 하부단위인 旗의 통솔자이며, 雜職으로 正8品이다.

앞서 살펴본 『順天府各掌重記』는 1890년에 순천부에서 작성된 중기로 작성연대가 본 중기와 8년 차이가 난다. 이에 『순천부각장중기』와 『순천군각장중기』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부서별 서책과 문서를 위주로 비교해 본 결과 16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향교에 보관된 4종의 서책과 문서는 수량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1776년 正祖가 朱子書와 先正의 문집에서 수집해 만든 책인 『兩賢傳心錄』<sup>7)</sup>은 4권 중 2권만 남아있다. 이 책은 모두 4篇으로 그 중 朱子の 글은 先正이 가려 뽑은 것이다.<sup>8)</sup> 『鎭營需米節目』과 『尋源錄』은 각 1권씩 남아 있다. 『六道綸音』은 1권이 加入되어 1898년에는 2권이 보관되고 있다.

<표 3> 『順天府各掌重記』와 『順天郡各掌重記』의 향교 서책 수량 비교

『順天府各掌重記』(1890년)		『順天郡各掌重記』(1898년)	
서명	수량	서명	수량
兩賢傳心錄	4卷	兩賢傳心錄	2卷
鎭營需米節目	2卷	鎭營需米節目	1卷
六道綸音	1卷	六道綸音	2卷
尋源錄	6卷	尋源錄	1卷

『순천군각장중기』에 수록된 戶籍의 항목 중에서 모두 65종의 호구장적이 확인되는데, 1888년의 戊子式 다음으로 1891년과 1894년, 1896년의 장적 3종이 加入되었다. 1891년의 辛卯式 장적은 10卷으로 수량이 나타나 있지만 1894년과 1896년의 장적은 수량이 표기되지 않았다. 그리고 1894년의 甲午式 장적 아래에는 ‘反貼次送于營邸吏家 東賊搶攘時見失’이 기재되어 있어서 장적의 상태를 알 수 있다. 1894년에는 奎奉準(1855~1895) 등을 필두로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일으킨

7) 『正祖實錄』卷1, 1776年(正祖 1) 5月 24日 甲午條.

“予在儲時 哀輯朱書及先正文集 作一冊子 名曰『兩賢傳心錄』 弁序于卷 姑未脫藁矣.”

8) 『正祖實錄』卷7, 1779年(正祖 3) 1月 29日 甲寅條.

“此冊凡四篇而 其中朱文即 先正所抄也.”

東學運動이 전개되었으며, 전라도 古阜城이 東賊에 의해 함락되었다.<sup>9)</sup> 이러한 혼란스러운 때에 장적이 유실된 것이다.

다음으로 公錢所의 항목에는 새로 備置된 문서 9종이 수록되어 있으며, 절목류와 『上下區別冊』이 각 1권씩 보관되어 있다. 수량 아래에 기입된 내용으로 干支의 시기를 대조해보면 공전소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는 1862년, 1871년, 1877년에 加入된 것이다. 본 항목의 내용은 『순천부각장중기』에는 수록되지 않았는데, 이 문서들이 1890년 이전에 加入된 것으로 미루어보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順天郡各掌重記』에 수록된 문서

부서명	문서명	수량	시기대조
戶籍	光緒 辛卯式	10卷	1891년
	光緒 甲午式	10卷	1894년
	建陽 丙申式	10卷	1896년
公錢所	都節目	1卷	壬戌舊件 (1862년)
	上下區別冊	1卷	
	都節目	1卷	辛未舊件 (1871년)
	上下區別冊	1卷	
	各面節目	18卷	
	三猫島節目	1卷	丁丑新備 (1877년)
	都節目	1卷	
	上下區別冊	1卷	
各面節目	18卷		

종합해보면 『순천군각장중기』에 수록된 서책은 鄉校(88종), 將官廳(9종), 刑房(2종)의 부서에서 총 99종이 보관되고 있었으며, 문서는 향교(22종), 書廳(5종) 紙所(2종), 修理廳(1종), 民庫(2종), 公錢所(9종)와 戶籍 65종이 보관되고 있다.

9) 『討匪大略』 甲午年(1894) 4月.

“東賊陷古阜城 昨年散去之後 尤無忌憚 漸肆猖獗 倡言國運 已盡天命 將新僞立大將 自稱宰相處處蜂起 所過擄掠 方伯不能禁守 牧莫敢抗 是月陷古阜.”

### 3.2 『同福縣各庫物種重記』

#### 3.2.1 중기의 구성

1860년 1월 동북현에서 작성된 본 중기는 체임 시 사무의 인계와 해유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동북현의 산하기관인 12곳의 부서에서 당시 보관하고 관리했던 물품과 재정상황이 기재되어 있다.

전체적인 기술체제는 하위항목인 부서명을 2~3자 정도 내려서 기입하여 물품과 쉽게 구분되도록 하였다. 또 부서명인 ‘色’과 ‘房’ 아래에 鄉校祭器秩, 社稷大祭祭器秩, 城隍厲祭祭器秩, 書册秩 등의 항목을 두어 변동사항을 일괄 정리하거나 부임한 관리 순으로 [某姓]等內備上’의 항목을 두어 물품의 내역을 기입하고 있다. 또 물품 간의 이동과 변동 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로줄을 그어 현재 물품의 상태나 보관 내력에 대해 묶어서 표기하고 있다. 부서별 담당자의 성명은 따로 기입되어 있지 않으며, 중기의 마지막 장에는 ‘官’의 수결이 있다.

禮房		
鄉校祭器秩		
祝板		1
鑰酌		35
鑰香盒		5
(中略)		
書册秩		
周易大全		14卷
諺解		5卷
詩傳大全		10卷
諺解		6卷
(中略)		
刑房		
無冤錄		1卷
典錄通考		5卷 內 1卷 無
受教輯錄		2卷 內 1卷 無
沈等內備上		
執鉅		1
中鉅		1
鐵釘		10
	}	破不用

다음으로 『동북현각고물중중기』의 물품 수량단위 표기는 일반적으로 ‘坐·件·介·雙·張·柄·斤·桴·立’을 사용하고 있다. 서책은 ‘卷’으로 표기하였는데, 일부의 물품은 단위를 쓰지 않고 수량만 표기되어 있다.

물품의 파손이나 훼손된 경우는 수량 아래에 ‘無·破不用·破無’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서에서 물품을 출급한 경우에는 ‘使令出給·束伍軍出給·出給將官廳’으로 기입되어 있다. 또한 ‘進上添補·春秋分用·隨時貿用·具蓋’와 같이 물품의 관리상태를 점검한 표시가 있다.

<표 5> 『同福縣各庫物種重記』의 부서별 물품 변동사항 예시

부서	물품	수량	변동 및 점검사항
工庫	馬鐵		丙辰春因營題革罷
	食鼎	4坐	春秋分用
書冊秩	五倫行實	8卷	內 4卷 無
	綱目	77卷	內 1卷 無
外工房	印床	1	又 1 藍院上
	布揮帳	1件	破無
軍器色	正鐵三穴銃	1柄	破無用
	鎗	2坐	內 1坐 使令出給 在1坐
大同色	八方漆大盤	4立	破無
	鍤食器	10件	具蓋

### 3.2.2 수록 기록물 분석

『동북현각고물중중기』에는 禮房의 書冊秩(88종)과 兵房(4종), 刑房(15종), 軍器色(1종)의 항목에서 총 108종의 서책이 확인되며, 문서와 책판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먼저 禮房의 항목은 ‘鄉校祭器秩, 鄉校祭服秩, 社稷大祭祭器秩, 社稷大祭祭服秩, 城隍厲祭祭器秩, 書冊秩’인 6개의 하위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중 書冊秩의 항목에 88종의 서책이 확인된다. 이 서책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經書類가 21종

으로 가장 많으며, 儒家類 15종, 文集類 12종, 詔令類 9종 순으로 나타난다.

이외에도 雜史類로 1519년(중종 14) 己卯士禍의 전말이 수록된 『己卯遺蹟』과 1728년 李麟佐·鄭希亮의 亂에 대한 내용이 담긴 『戡亂錄』 그리고 1776년 世孫인 正祖의 代理聽政을 반대하던 洪麟漢과 鄭厚謙 등을 賜死한 일이 기록된 『明義錄』이 기록되어 있다.

御製本으로는 『御製龜鑑』, 『御製大訓』, 『御製繪音』이 있는데, 『어제귀감』은 1757년 英祖가 후대의 군황을 위해 역대 전적에서 治國에 필요한 내용을 발췌한 교훈서이며, 원 서명은 ‘御製古今年代龜鑑’이다. 또 『어제대훈』은 辛壬士禍의 주동자인 소론파 陸虎龍, 金一鏡 등을 처벌하기 위해 1741년에 英祖가 찬하여 내린 훈유문이며, 『어제윤음』은 1776년에 正祖가 洪麟漢, 鄭厚謙 등 僻派를 성토하여 죄를 주고 그 사실을 널리 알린 윤음이다. 『어제윤음』 이외에 『癸卯繪音』과 『壬寅繪音』이 있다. 서명의 ‘癸卯’는 정조가 재위했던 1783년으로 판단되는데, 이 해에 총 7번의 윤음이 내려졌음을 『정조실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 중 10월 8일조에는 湖南 民人에게 윤음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계묘윤음』은 이때 내려진 윤음으로 추정된다.

예방에 보관되어 있는 서책 중에서 『字彙』, 『寒水齋集』, 『類苑叢寶』, 『近思錄』, 『忠烈錄』은 수량 아래에 ‘兪等內備上’이 기재되어 있다. 책이 갖추어진 시기를 대조해보면 1857년 6월부터 1859년 11월까지 동북현감으로 재임했던 兪建煥<sup>10)</sup> 때에 加入되었던 서책이다. 『동북현각고물중중기』가 1860년 1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면 신임 현감이 부임하기 이전까지 서책의 加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兵房과 刑房, 軍器色의 항목에서 20종의 서책이 확인된다. 兵房에 보관되어 있는 서책은 良役に 관한 사항이 수록된 『良役實摠冊』과 『邑摠冊』, 『兵將圖說冊』, 『輿地勝覽冊』이 각 1권씩 있는데, 『여지승람책』은 훼손으로 인해 수량 아래에 ‘破不用’이라 기재되어 있다.

刑房에는 正法類 14종과 詔令類 1종이 보관되고 있었으며, ‘[某]等內備上’의

10) 『外案考』 卷4, 全羅道 同福縣監, 340.

兪建煥: 丁巳(1857) 6月 ~ 己未(1859) 11月

소 항목으로 나누어 기입되어 있다. 책의 加入시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감의 재임 시기를 대조해보면 먼저 『大明律』, 『經國大典』, 『決訟類聚』는 1766년 5월부터 1769년 7월까지 재임했던 李渭 현감 때 加入된 책이며, 『欽恤典則』은 1775년 8월부터 1779년 5월까지 재임했던 朴華源 현감 때에 加入되었다. 또 『大典通編』은 李榮運<sup>11)</sup> 현감 때 加入되었으며, 新頒 『無冤錄』과 언해본은 嚴思勉<sup>12)</sup> 현감이 재임하던 시기에 加入된 책이다. 형방의 마지막 소항목인 ‘鄭等內備上’은 1837년 5월부터 1839년 7월까지 재임했던 鄭允容 현감 때에 加入된 서책을 말하며, 이때에 『大典通編』과 『增修無冤錄』 및 언해본이 加入되었다.

이처럼 형방에 서책이 마지막으로 加入된 시기는 1839년으로 확인되며, 軍器色의 부서에는 『兵學指南』 2권이 보관되어 있다.

### 3.3 『光陽縣各房都重記』

#### 3.3.1 중기의 구성

본 중기는 1869년 7월에 광양현에서 작성된 중기로 광양현 관아의 16곳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각 물품들을 점검한 후 작성한 책이다.

전체적인 기술체제는 부서명을 하위항목으로 두고 1字 아래로 내려쓰고 있다. 물품의 수량 아래에 물품의 변동사항이 기입되어 있는데, 동일한 사항일 경우에는 가로줄을 긋고 그 아래에 내용을 기입하였다.

마지막 장에는 ‘行官’의 수결과 본 중기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重記色, 軍器監官, 兵房軍官, 兵房色, 戶長, 吏房의 담당자 이름과 ‘座首 徐’가 기입되어 있다.

11) 『外案考』 卷4, 全羅道 同福縣監, 340.

李榮運: 丙午(1786) 3月~己酉(1789) 6月

12) 『外案考』 卷4, 全羅道 同福縣監, 340.

嚴思勉: 乙卯(1795) 8月~己未(1799) 11月

<b>陸軍器</b>		
鳥銃	428柄	
鉛丸	200,253介	
太平籥	1雙	
(中略)		
<b>水軍器</b>		
長箭	345桴	] 修補
筒兒	300箇	
尾箭	338桴	
別備秩		
鳥銃	76柄	
船上汙物秩		
兵船	1隻	
(中略)		
<b>束伍房</b>		
城三門鎖金	3介	
馬報旗	1面	
兵學指南	3卷 內 1卷 軍器廳在	
	1卷 將官廳在 1卷 船所在	

본 중기에 사용된 물품의 단위로는 일반적으로 ‘柄·件·坐·介·立·雙·面·桴·箇·部·間·隻’이 쓰였으며, 가축류는 ‘口’, 문서는 ‘張’으로 표기되었고, 서책은 ‘卷’이나 ‘件’이 사용되었다.

물품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기법으로 훼손되어 없어진 물품은 ‘無·頽壓·破·燒燼’으로 기입하고 있으며, ‘朴大裕無面’과 같이 이름을 기입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물품의 보관처에 변동이 생기면 ‘將官廳在·烽臺在·使令廳在·書院在·自京來在·水軍器在’로 옮겨간 장소가 기재되어 있다.

물품이 새로 갖춰지거나 보수되었을 경우에는 ‘修補’이나 ‘己未新備’와 같이 해당 시기를 나타내는 干支를 함께 기입하고 있다.

<표 6> 『光陽縣各房都重記』의 부서별 물품 변동사항 예시

부서	물품	수량	변동 및 점검사항
水軍器	鐵甲冑	68件	修補
束伍房	兵學指南	2卷	己巳春 左水營受來水陣將官廳在

부서	물품	수량	변동 및 점검사항
禮房	鄉約集	31卷	內 5卷 各面約正受 1卷 朴大裕 無面
	典錄通考	2卷	內 1卷 破
兵房	太平籥	1雙	使令廳在
	蓬艾炬	40柄	戊辰修補 烽臺在
刑房	經國大全	7卷	內 2卷 作廳失火時燒燼
工房	廊廳	9間	頽壓
	內衙	12間	無

### 3.3.2 수록 기록물 분석

본 중기에 수록된 서책은 禮房의 부서에서 81종, 刑房에서는 13종이 확인되며, 문서류나 책판은 수록되지 않았다. 먼저 예방에 보관되고 있는 서책은 經書類 19종, 儒家類 17종, 文集類 8종의 순으로 경서류가 가장 많다. 編年類에는 『通鑑』, 『稽古錄』 등이 있으며, 地理類에는 『曦陽誌』,<sup>13)</sup> 『闕里誌』 등의 서책이 있다. 또 御製本으로는 『御製行誦冊』, 『御製龜鑑』, 『御製大音』, 『御製擊綸音』, 『御製養老綸音』이 있으며, 정조 때 위조된 윤음이 유포되자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내린 『曉諭綸音』도 보관되고 있다.

서책의 단위는 ‘卷’과 ‘件’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孟子大全』의 경우 2卷 式 2件으로 기입되어 있어서 ‘件’의 의미가 ‘2벌’ 또는 ‘2秩’임을 알 수 있다. 수량의 아래에 ‘新舊凡’이나 ‘新舊并’, ‘具諺解’가 기재되어 있어서 서책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書院在’, ‘在戶房’과 같이 향교에 있었던 서책이 書院이나 戶房으로 옮겨 보관되고 있는 사항도 기입되어 있다.

본 예방의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서책 가운데 중기의 원본에서 서명의 誤字가 확인이 되는데, 예를 들면 闡義點[昭]鑑, 喪禮寶[補]篇, 闕黑[里]誌 등이 있다. 한자의 음가가 같거나 모양이 비슷한 한자가 잘못 쓰여 있는데, 이는 다른 중기에 서도 간혹 보여 지고 있다.

한편 서책이 예방에 加入된 시기를 수량 아래에 기입된 干支의 시기를 대조해

13) 『曦陽』은 신라시대 때 광양현의 옛 이름이다.

보면 파악할 수 있다. 예방의 항목에서 마지막 부분에 기재된 『世廿諸譜冊』 1권은 甲午年(1834) 巡營으로부터 받아서 戶房에 보관되어 있으며, 『河西金先生集』 8권과 『關里誌』 1권은 乙巳年(1845) 12월 巡營에서 보낸 것으로 향교에 보관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광양현의 예방에 마지막으로 서책이 加入된 시기는 1845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중기에서 서책이 기입된 순서는 예방에 서책이 加入된 순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巡營에서 보내 온 서책으로는 『五禮儀』 2권, 『世廿諸譜冊』 1권, 『河西金先生集』 8권, 『關里誌』 1권이 있으며, 『御製大音』 1권은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서 광양현의 예방에 보관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兵房의 부서에는 13종의 正法類 서책이 보관되고 있다. 이 중 『經國大典』은 7권 중 2권이 作廳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光陽縣地圖』<sup>14)</sup>에서 확인되는 作廳의 위치는 광양현의 邑城 내에서 관아의 건물인 衙廡의 우측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이 병방에 加入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이후 4권이 추가로 加入되었다.

『大明律』은 7권이 있으며, 이후에 新頒 『大明律』 4권이 加入되었다. 또 『無冤錄大全』의 등초본인 謄出 『無冤錄大全』과 新頒 『無冤錄大全』 및 언해본이 각 1권씩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형방의 항목에서 마지막에 기입된 『大典會通』 5권의 加入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865년에 간행된 책이므로 이후에 加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3.4 『高山縣都重記』

#### 3.4.1 중기의 구성

1880년 5월에 고산현에서 작성된 본 중기는 관아의 부서별 물품을 점검하고 그 수량과 변동사항을 기재하고 있는데, 부서명을 하위항목으로 두고 있다.

14) 『光陽縣地圖』 1872년본, 규장각 소장.

이 책의 전체적인 기술체제로 먼저 하위항목인 부서명은 2字 내려서 기입하고 있으며, 소항목인 [某姓]等備上은 1字 올려서 기입하여 物目的 내용과 구분하고 있다.

부서명인 ‘色’과 ‘房’ 아래에 ‘鄉校祭器’와 ‘大成殿祭器’라는 항목을 두어 물품 현황을 일괄 정리하고 있다. 또 [某姓]等備上의 소항목을 두고 현감이 부임한 순으로 각 물품의 구비내역을 기입하고 있어서 현감이 재임했던 시기를 대조해 보면 언제 물품이 구비되고 보관된 것인지 알 수 있다.

이 책에는 중기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사람이나 부서별 담당자의 성명은 기재되지 않았으며, 책을 양면으로 펼쳤을 때 官印 3顆가 날인되어 있다. 마지막 장에는 ‘行縣監’의 수결이 있다.

禮房色	
鄉校 祭器	
鍮簋	25 盖25
鍮爵	25 盖25
鍮象樽	7
(中略)	
趙等備上	
玄谷板	137立
四書諺解	鄉校上
吳等備上	
忠烈公遺稿集板	67立 因泰仁縣文移移送同縣
趙等備上	
小學	4卷 鄉校上
警民篇	2卷 內 1卷 鄉校上 1卷 官上
洪等備上	
繪音	4卷
字恤典則	1卷
(中略)	
刑房色	
大明律	4卷 破無
明義錄	3卷 內 2卷 破無
李等備上	
行枷 <sup>15)</sup>	8立
刑板	2立

〕 禮房色 次次傳授

15) 옥중에 있는 죄인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목에 씌운 刑具.

물품의 단위 표기는 일반적인 수량단위인 ‘介·雙·間·件·立·部·柄·坐·張·斤·桴·把’와 서책은 ‘卷’을 사용하였는데, 일부 물품은 단위를 기입하지 않고 수량만 쓴 부분도 있다.

물품의 변동사항에 관한 표기법으로 훼손되어 없어진 물목에 대해서는 수량 아래에 ‘破無·破·失’로 기입되어 있으며, 물품이 보관된 장소에 변동이 있을 시 ‘鄉校上·官上·官上次次傳授·禮房色次次傳授·訓長授·面長分給·本縣束伍軍出給·官廳授’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作錢正月以十二月至下·己酉四月日·戊午受來上’과 같이 해당 시기나 ‘具鎖金·入盛櫃子’로 물품의 보관상태 및 방법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표 7> 『高山縣都重記』의 부서별 물품 변동사항 예시

부서	물품	수량	변동 및 점검사항
禮房色	鄉校祭器		入盛櫃子
	鄉員節冊	2卷	內 1卷 鄉校上 1卷 官上
	御製大訓冊		官上次次傳授
	大成殿	15間	新建瓦丹青
外倉	食鼎	1坐	庫子奴正叔 無面
	兵學指南	4卷	束伍執事 金夏正 授
	鉛丸	1,440介	丁巳受來上
	火藥	35斤	
戶房色	丁字閣		重修
軍器色	鳥銃	50柄	修改

### 3.4.2 수록 기록물 분석

『高山縣都重記』에 수록된 기록물 중 서책은 禮房色(19종), 刑房色(12종), 軍器色(1종), 外倉(2종)의 항목에서 34종이 확인된다. 문서는 禮房, 刑房, 軍器色の 항목에서 6종의 문서와 戶籍色の 항목에는 戶口帳籍 72종이 수록되어 있다. 또 禮房色の 항목에서 趙緯韓(1567~1649)의 『玄谷集』, 吳達濟(1609~1637)의 『忠烈公遺稿集』과 『輿地勝覽』의 책판이 확인된다.

본 중기에 수록된 物目은 부서별로 ‘[某姓]等備上’의 하위항목을 두어 현감의

재임 시기에 따라 나누어 기재되어 있어서 현감의 재임 시기를 파악해보면 서책이나 문서, 책판이 加入된 시기를 알 수 있다.

먼저 禮房의 부서에서 보관되고 있는 서책은 儒家類 6종, 詔令類 5종과 經書類인 『四書諺解』와 『洪武正韻』이 있다. 傳記類에는 『文廟記配享錄』, 『精忠錄』이 있으며, 明의 태조부터 天啓 연간의 사실을 간략하게 모은 史書인 『皇明史略』이 있다. 그리고 御製本으로는 『御製常訓』, 『御製大訓冊』, 『御製韻考』가 있으며, 『어제상훈』은 언해본이 갖추어져 있다.

예방의 서책 중에서 鄉校로 옮겨진 책으로는 『四書諺解』, 『小學』, 『警民篇』이 있고, 『擊蒙要訣』의 경우 10권 중 각 1권씩 향교와 훈장에게 옮겨갔으며, 8권은 면장에게 분급해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예방의 서책이 加入된 시기를 살펴보기 위해 ‘[某姓]等備上’의 하위항목에서 현감의 재임시기와 대조해 본 결과 ‘洪等’은 洪冕浩로 1781년 5월부터 1784년 1월까지 재임했으며, ‘李等’은 1800년 8월부터 1801년 6월까지 재임했던 李仁行으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고산현의 예방 부서에 마지막으로 서책이 가입된 때는 1801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중기가 작성된 1880년을 기점으로 보면 서책의 加入도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형방에 보관되고 있는 서책은 12종이 있는데, 正法類 10종, 詔令類 1종, 雜史類 1종으로 분류된다. 어제본으로는 『御製警民篇』 1권이 있으며, 이 책이 加入된 시기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英祖實錄』<sup>16)</sup>의 기록을 통해 1764년 이후에 가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형방의 부서에 서책이 加入된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某姓]等備上’의 하위항목과 현감의 재임 시기를 대조해 보면 『無冤錄』 3권은 朴大壽가 재임했던 1842년 12월부터 1844년 12월간에 加入되었으며, 『大明律』 4권은 徐載元이 재임했던 시기인 1862년 5~6월로 확인된다. 형방의 서책 중 가장 마지막에 기재된 『大典會通』 5권은 沈文澤이 현감으로 있던 1866년 12월부터 1870년 6월 사이에 加入된 것으로 확인된다.

16) 『英祖實錄』 卷103, 1764年(英祖 40) 3月 24日 乙亥條.

“上召編次人親製『警民篇』.”

外倉의 항목에서는 『兵學指南』 2종이 기재되어 있는데, 1종은 ‘破無’이고, 다른 하나는 4권인데 속오군의 집사 김하정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이 책은 趙等內 때 加入되었는데 인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고산현도중기』에 수록되어 있는 문서는 禮房(3종)과 刑房(2종), 軍器色(1종) 그리고 戶籍色(74종)의 항목에서 확인된다. 문서의 수량 단위는 ‘卷’과 ‘件’으로 표기되고 있다.

먼저 禮房의 항목에서 확인되는 문서는 鄉所의 일을 맡았던 관원과 관련된 『鄉員節冊』이 있으며, 鄉校와 官에 각 1권씩 옮겨져 보관되고 있다. 수량의 단위가 ‘卷’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책자 형태로 만들어진 문서로 볼 수 있다. 또 『邑誌摠冊』 5件은 南殷老가 재임했던 기간인 1776년 6월에서 1778년 11월 사이에 예방에 加入되었으며, 『邑先生案』 1件은 李惟鐸이 재임했던 1829년 2월부터 11월 사이에 加入되었다. 『읍선생안』의 수량 아래에는 ‘乙酉十二月日’이 쓰여 있는데, 문서가 加入된 시기를 고려해 볼 때 1825년에 작성된 名簿로 추정된다.

刑房에는 邸吏와 관련된 『備邊司筵稟節目』과 『邸弊厘正冊』이 보관되고 있으며, 수량은 단위 없이 ‘一’자로 기재되어 있다. 『邸弊厘正冊』은 韓等內 때에 갖춰진 문서인데, 『外案考』를 통해 고산현감을 대조해보면 韓等內는 1805년 6월부터 1809년 9월까지 재임했던 韓克裕이며, 이때에 加入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軍器色の 항목에서는 『火砲成冊』의 문서가 확인되는데, 束伍軍의 訓導에게 주었다가 없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戶籍色の 항목에는 74종의 호구장적이 수록되어 있다. 장적명의 기재 양식으로는 ‘年號 [某干支]式’으로 기입되어 있으며, 아래에는 수량이 ‘卷’의 단위로 표기되어 있어서 책자 형태로 만들어진 문서로 볼 수 있다. 연호와 干支를 대조하여 장적이 만들어진 연대를 파악해보면 1612년부터 1879년까지로 나타난다. 이들 호구장적이 3년마다 成冊되어진 것으로 볼 때 15종<sup>17)</sup>의 장적이 누락되었다.

각 장적의 서명인 [某干支]式에서 干支의 誤字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午’가 ‘子’로 잘못 기입된 장적으로는 1618년의 戊午式, 1630년의 庚午式, 1642년의

17) 1615 · 1621 · 1624 · 1627 · 1633 · 1636 · 1639 · 1657 · 1669 · 1702 · 1714 · 1759 · 1762 · 1777 · 1783년으로 총 15종의 장적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난다.

壬午式을 비롯해 1834년의 甲午式까지 10종의 장적명에서 확인된다. 또 ‘卯’가 ‘酉’로 기입된 장적은 1651년의 辛卯式, 1663년의 癸卯式, 1675년의 乙卯式, 1735년의 乙卯式이 있으며, ‘酉’가 ‘卯’로 기입되어 있는 辛酉式(1801년) 장적도 있다. 이외에도 1696년의 丙子式에서 ‘丙’이 ‘甲’으로 기입되어 있으며, 1819년의 장적인 ‘己卯式’은 ‘乙酉式’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干支의 誤字는 타 중기에서도 간혹 보여 지고 있는데, 중기는 필사본으로 쓰여 중기를 작성하는 관원이 앞서 작성된 중기 책에서 오류 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거나 ‘午/子’나 ‘己/乙’과 같이 字形이 유사하여 看過한 데서 나타난 것으로 간주된다.

호적색의 장적 중 1810년의 庚午式 장적의 다음 행에는 ‘습 154卷 內 10卷破 10卷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처음 기재된 1612년의 壬子式 장적부터 1810년까지의 장적 154권 중 파손되고 유실된 20권의 장적을 제외하면 134권이라는 것인데, 중기에 기재된 실 수량은 112권으로 22권이 남는다. 또한 마지막 장적인 1879년 己卯式의 다음 행에는 ‘都습 238卷 內 1卷 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또한 전체 장적이 214권으로 중기에 기재된 사실과 차이가 있는데, 15종의 장적이 누락되어 생긴 오류로 판단된다.

『고산현도중기』의 禮房色 항목에서는 『玄谷集』과 『忠烈公遺稿集』, 『輿地勝覽』의 책판이 확인되며, 수량 단위는 ‘立’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 책판의 수량 아래에는 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충렬공유고집』의 책판은 泰仁縣과 文移로 인해 移送되었고, 『여지승람』의 판자는 巡營에서 分板하여 각읍에 진상하도록 알렸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본 중기에 따르면 현곡집을 제외한 2종은 현재 고산현의 예방 부서에 보관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8> 『高山縣都重記』의 禮房色에 수록된 책판

책판명	수량	변동사항	가입시기
『玄谷集』	137立		趙等備上
『忠烈公遺稿集』	67立	因泰仁縣文移移送同縣	吳等備上
『輿地勝覽』 板子	59立	開邦報巡營分板各邑進上	朴等備上

각 책판이 언제 예방의 부서에 비치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예방색의 하위항 목인 [某姓]等備上'의 현감 재임시기를 대조해 보았다. 『外案考』의 '高山縣監' 조에는 1776년 6월에 부임한 南殷老부터 기재되어 있어서 이전의 현감 명부는 알 수 없다. 본 중기에는 각 책판이 趙等·吳等·朴等 때에 비치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는데, 남은노 이전에 기입된 것으로 보아 3종의 책판은 1776년 이전에 예방에 加入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현감 재임시기의 대조가 불가능하여 책판 의 加入된 시기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冊板目錄』에 수록된 내용을 통해 책판명을 비교해 보았다.

<표 9> 『冊板置簿冊』과 『完營冊板目錄』을 통한 고산현의 책판 현황 비교

책판명	『冊板置簿冊』 <sup>18)</sup> (1740년, 개인 소장본)	『完營冊板目錄』 <sup>19)</sup> (1759년, 규장각 소장본)
『玄谷集』	白紙 6卷	白紙 6束 10丈 (趙緯韓著)
『忠烈公集』	白紙 12卷	白紙 7束 (闕失)
『輿地勝覽』	白紙 57卷	白紙 54束 (闕失)

『冊板置簿冊』은 1740년에 작성된 것이며, 『完營冊板目錄』은 1759년에 작성 된 책판목록이다. 『완영책판목록』에는 각 도의 地名 아래에 서명과 冊紙, 張數, 책판의 刑缺 등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중 『충렬공집』과 『여지도서』의 경우에는 장수 아래에 '闕失'이라고 기입되어 있다.

따라서 『책판치부책』과 『완영책판목록』의 작성 시기 및 책판 명을 대조해 본 결과 고산현의 禮房에 보관되어 있는 3종의 책판은 1759년 이전에 예방에 加入된 것으로 판단되며, 최소 1740년에는 예방부서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8) 정형우·윤병태,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경인문화사, 1995), 351.

19) 上揭書, 548.

### 3.5 『長水縣重記』

#### 3.5.1 중기의 구성

1888년 2월에 장수현에서 작성된 것으로 이 당시 장수현 관아의 재정현황과 부서별로 구비해 두고 보관 중인 물품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다.

전체적인 기술체제는 부서명을 하위항목으로 두고 있는데 부서명은 2字 아래로 내려서 기입하고 있으며, 禮房의 소항목<sup>20)</sup>은 1字 아래에 쓰였다. 물품 간의 변동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재된 물목의 수량 아래에 가로줄을 긋고 내용을 기입하고 있다. 이 중기를 작성하는데 참여했던 사람이나 부서별 담당자의 성명은 표기되지 않았으며, 마지막 장에는 ‘兼官’의 수결이 있다.

通引		
小紙筒	2件	] 在樓上庫
紙筒	2件	
白紙	2束	鄉廳
印信櫃	1坐	
(中略)		
戶房		
癩瘋方	2件	己巳大水所盛楨子漂流
輿地勝覽	1卷	校上
警民篇	7卷	七面面任受
(中略)		
鄉校		
文廟	3間	
明倫堂	4間	
祭器書冊庫	2間	
詩傳	10卷	內 初卷 李必才 失 在9卷
選文撮要	2卷	內 1卷 丁思用 失
(中略)		
工房		
大燭臺	1雙	] 客舍
紅襪	1件	
沙香爐	1坐	

20) 禮房 부서의 소항목으로 祭器, 厲壇, 城隍壇, 鄉校, 鄉校祭服, 鄉校祭器가 있다.

물품의 수량표기는 일반적인 단위로 ‘件·坐·束·間·雙·立·介·柄·張·桴·面’과 가측류는 ‘口’, 서책은 ‘卷’이나 ‘件’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물품명과 수량만 기입하고 있다. 물품의 변동사항에 관한 표기법으로 먼저 보관처의 이동으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在樓上庫·在縣例橫·在刑廳이나 東軒上·校上·京關上送’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물건이 부서에 加入될 경우에는 ‘七面面任受·校奴二淡受·七面鄉約分受’로 기재되어 있으며, ‘乙巳自巡營下來·丙寅自京下來’와 같이 구체적인 시기도 기입하고 있다.

다음으로 물품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 ‘無’를 쓰기도 하지만 ‘初卷 李必才失·1卷 丁思用 失·李己必 無面’ 등과 같이 해당 사실과 관련있는 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있다. 그리고 ‘乙巳大水所盛橫子漂流·丁卯自巡營膾頌·丙辰趙等新備·七面鄉約分受’와 같이 해당시기와 요인 및 처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쓰고 있다.

<표 10> 『長水縣重記』의 부서별 물품 변동사항 예시

부서	물품	수량	변동 및 점검사항
通引	軍案櫃	1坐	東軒上
戶房	救荒方	7卷	七面面任受
邑倉	生羔	20口	內 雄2口 雌19口
鄉校	光國諸慶錄	2卷	內 1卷 失
	勘亂錄	4卷	序文1卷 因京關上送
兵房	大鼓	1坐	新備
刑房	新增無冤錄	3卷	丁丑自京下來
工房	食鼎	1坐	具蓋
軍器	籠	1坐	具鎖金
	耳藥桶	115介	
	認旗	1面	

### 3.5.2 수록 기록물 분석

본 중기에 수록된 서책은 禮房(80종), 戶房(7종), 兵房(1종), 刑房(15종), 都訓導(4종), 補民廳(3종), 軍器(1종)의 항목에서 총 111종이 확인되며, 문서는 戶房(4종), 兵房(3종), 補民廳(3종), 軍器(2종)의 항목에서 12종이 확인된다.

먼저 禮房의 부서에 보관되고 있는 서책은 『書傳』, 『詩傳』, 『周易』, 『論語』, 『中庸』, 『大學』의 經書類가 23종 있으며, 언해본과 大文이 갖추어져 있다. 또 『戒酒綸音』이나 『受教輯錄』 등의 詔令類 11종과 『五禮儀』, 『喪禮補篇』, 『經國大典』 등의 正法類 8종 및 儒家類 7종, 史書類 4종, 傳記類 3종, 編年類 2종 등이 있다.

그리고 御製本으로 7종의 서책이 있는데, 6종은 英祖 연간에 1종은 正祖 때에 지어진 책이다. 중기에 기재되어 있는 순으로 英祖가 지은 서책부터 살펴보면 『御製常訓』은 英祖가 肅宗의 기일을 맞아 세자와 후대 임금들에게 내린 교훈서로 1745년에 간행되었으며, 언해본과 『어제상훈』 1권이 추가로 加入되어 있다. 『御製警世問答』은 1761년에 지은 책이며,<sup>21)</sup> 『御製百行源』은 1765년에 지은 책으로 부모를 섬기는 도리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sup>22)</sup> 또 원제가 『御製古今年代龜鑑』인 『御製龜鑑』은 1757년에 후대의 왕들에게 교훈을 주기위해 英祖가 편집한 책이다. 『御製訓書』는 1756년에 지은 것으로 敬天, 愛民, 禮臣을 細目으로 삼고 있는 책이며,<sup>23)</sup> 『御製孝悌篇』은 1763년에 지은 책이다.<sup>24)</sup> 그리고 『御製大訓』은 1769년에 반포된 개정본으로 추정된다.<sup>25)</sup>

21) 『英祖實錄』 卷97, 1761年(英祖 37) 6月 17日 甲申條.

“御製『警世問答』蓋取自警而警世之意也.”

22) 『英祖實錄』 卷106, 1765年(英祖 41) 8月 6日 己酉條.

“上親製百行源 命刊進之 蓋備述爲人子 竭力事親之道 凡數千言 聖心追慕而作也.”

23) 『英祖實錄』 卷88, 1756年(英祖 32) 6月 7日 癸卯條.

“上御塔源殿齋室 召見編次人及儒臣 親製『訓書』以敬天, 愛民, 禮臣爲目 使儒臣往示時原任大臣.”

24) 『英祖實錄』 卷102, 1763年(英祖 39) 8月 12日 丙申條.

“上親製『孝悌篇』 命印頒諸臣.”

25) 『英祖實錄』 卷112, 1769年(英祖 45) 1月 21日 乙巳條.

正祖가 지은 책으로는 『御製養老綸音』이 있는데, 원제는 『御製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鄉飲儀式鄉約條例綸音』이며 1797년에 당대의 풍속교정을 위해서 養老와 務農을 권장하며, 小學·五倫行實·鄉飲儀式·鄉約條例의 서책을 인출하고 배포한다는 내용이 담긴 책이다.

한편 예방의 항목에 수록된 서책 중 가장 마지막에 기재되어 있는 金麟厚(1510~1560)의 『金河西集』 8권, 『當官功過格跋』 1권, 『三班禮式』 1권은 수량 아래에 서책이 加入된 때와 巡營과 京(한양)으로부터 下來 받았다는 내용이 쓰여있다. 干支를 대조해 본 결과 『金河西集』은 1845년, 『當官功過格跋』은 1853년 그리고 『三班禮式』은 1886년 예방에 加入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장수현의 예방 부서에 서책이 마지막으로 加入된 때는 1866년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戶房의 부서에는 7종의 서책이 보관되어 있는데, 『癩瘋方』, 『簡易癩瘋』, 『牛馬救療方』의 醫書와 『農家集』, 『救荒方』의 農書가 있다. 또 『輿地勝覽』 1권은 호방에서 鄉校로 옮겨져 보관되고 있다. 이중 『벽온방』은 2권이 櫃子에 담겨 보관되고 있었는데, 己巳년에 발생한 대홍수로 인해 표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 7面<sup>26)</sup>의 面任에게 받은 책으로 『救荒方』과 『警民篇』이 각 7권씩 남아있다.

兵房에는 丁卯년에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民堡輯說』이 1권 보관되어 있는데, 干支의 시기를 대조해보면 1867년으로 확인되어 이때 병방에 加入된 책이다.

刑房의 부서에 보관되어 있는 서책은 총 15종이며, 이중 正法類가 10종, 詔令類는 3종이 있다. 형방의 항목에서 마지막에 기재되어 있는 『新增無冤錄』과 『大典會通』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책이며, 干支의 시기를 대조해 보면 『신증무원록』은 1817년, 『대전회통』은 1866년에 加入된 것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형방에 마지막으로 서책이 加入된 때는 1866년임을 알 수 있다.

都訓導의 항목에서는 『兵學指南』 3종과 『兵將圖說』의 兵書가 확인되며, 補民廳에는 『貢膳定例』 2종인 3권과 7권, 『小學』이 보관되어 있다. 『공선정례』

“藥房入侍 命刊布改本『大訓』時改定『大訓』而未刊布 因領政洪鳳漢所奏 遂命頒布.”  
26) 『湖南邑誌』에 의하면 장수현의 坊面은 ‘新村邑內面, 身南面, 身西面, 身北面, 任北面, 任縣內面, 任南面’으로 총 7면으로 나타나 있다.

3권은 巡營으로부터 받아서 縣例櫝에 보관되고 있으며, 7권은 7면의 面任에게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소학』은 丙辰년 趙等內 때에 구비된 책으로 이 책도 7면의 향약에서 나누어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干支의 시기를 대조해 보면 1856년에 현감으로 재임했던 趙秉老<sup>27)</sup>이므로 이 책이 1856년에 보민청에 加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軍器의 항목에서 가장 마지막 행에 기입된 『煮炒方』은 『煮硝方』이 잘못 쓰여진 것으로 판단되며, 화약의 원료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兵書이다. 이 책은 丁卯년에 巡營으로부터 謄書되어 반포된 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干支의 시기를 대조해 보면 1867년으로 확인된다.

본 중기에서 부서별로 확인되는 문서는 戶房에서 4종, 兵房 3종, 補民廳 3종 그리고 軍器의 항목에서 2종이 확인된다. 문서의 유형은 節目 6종, 良役 2종, 軍案 1종 등이 있다. 병방에 보관되고 있는 문서 중 『良役查正冊』 3件은 查正廳과 관련되어 京司로 보내졌다는 기록이 있다.

<표 11> 『長水縣重記』의 부서별 문서

부서명	문서명	수량	변동사항
戶房	田糶救弊節目	1件	在縣例櫝
	戶籍雜費新式節目	1件	
	勸起冊	2件	在縣例櫝
	自首冊	2件	
兵房	良役查正冊	3件	因查正廳關還送京司
	良役冊	1件	
	軍案冊	1卷	在縣例櫝
補民廳	民庫節目	1卷	在鄉廳
	"	1卷	新定
	邸弊厘正節目	1卷	在縣例櫝
軍器	火炮冊	2卷	
	節目冊	2卷	

27) 『外案考』 卷4, 全羅道 長水縣監, 336.

趙秉老: 甲寅(1854) 12月 ~ 丙辰(1856) 11月.

#### 4. 기록물의 類別 비교

호남지역의 郡과 縣에서 작성된 중기는 선행 연구된 『任實縣重記冊』을 포함하여 6종의 중기에 기록물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중 『順天郡各掌重記』가 가장 많은 종수의 서책과 문서가 수록되어 있고 冊板은 『高山縣都重記』에서만 확인된다.

먼저 『임실현중기책』에는 104종의 서책과 97종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으며, 서책은 經書類 27종, 正法類 18종, 儒家類 17종, 詔令類 6종, 兵家類 3종, 傳記類 2종 등으로 분류된다. 문서로는 55종의 호구장적과 量案 13종, 節目類 4종, 官案 2종 등이 있다.

『順天郡各掌重記』에는 서책 99종과 문서 106종으로 가장 많은 종수의 기록물이 수록되어 있다. 순천부에서 작성된 중기의 내용에서 16종의 문서가 추가되어 있는데, 節目類의 문서와 戶口帳籍 3종이다.

『同福縣各庫物種重記』와 『光陽縣各房都重記』에는 서책만 수록되어 있는데, 『동북현각고물중중기』에는 108종의 서책이 수록되어 있으며, 經書類는 21종으로 가장 많으며, 正法類 16종, 儒家類 15종, 文集類 12종, 詔令類 10종 등으로 분류된다. 『광양현각방도중기』는 94종의 서책이 수록되어 있는데, 經書類 19종, 儒家類 17종, 正法類 13종, 文集類 8종 등으로 분류된다.

『高山縣都重記』에는 서책 34종, 문서 78종과 冊板 3종으로 총 115종의 기록물이 수록되어 있다. 서책은 正法類 10종, 儒家類 6종, 詔令類 5종, 傳記類 2종 등으로 분류되며, 문서는 74종의 호구장적과 節目類, 官案 등이 있다. 책판은 『玄谷集』, 『忠烈公遺稿集』, 『輿地勝覽』이 확인된다.

『長水玄重記』에서는 총 123종의 기록물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중 서책이 111종, 문서가 12종이다. 서책은 經書類 23종, 正法類 18종, 詔令類 14종, 儒家類 7종, 史書類 4종 등으로 분류되며, 문서는 節目類 6종과 良役 2종, 軍案 등이 있다.

<표 12> 호남지역 郡·縣의 중기에 수록된 기록물 현황

중기명	서책	문서	책관	총계
『任實縣重記冊』	104	97		201
『順天郡各掌重記』	99	106		205
『同福縣各庫物種重記』	108			108
『光陽縣各房都重記』	94			94
『高山縣都重記』	34	78	3	115
『長水縣重記』	111	12		123
총 계	550	293	3	846

한편 호남지역 군·현의 중기에 수록된 기록물 중 동일한 서명을 가진 서책의 현황을 파악하여 수령이 통치하는데 참고하고 활용했던 서책의 유형과 보관처에 대해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호남지역의 郡·縣에서 작성된 6종의 중기 자료에서 총 550종의 서책이 있으며, 이 중 동일한 서명을 가진 서책은 93종이다. 이를 대상으로 서책을 四部로 분류해보면 經書類가 25종으로 가장 많으며, 史部의 正法類 16종, 子部의 儒家類 14종, 史部의 詔令類 9종과 傳記類 5종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동일 서명의 서책 93종 중에서 임실, 순천, 동복, 광양, 고산, 장수에 공통적으로 비치된 서책은 『小學』과 『欽恤典則』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소학』은 향교나 禮房, 『흠휼전칙』은 刑房에 비치되어 필수 지침서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郡·縣에서도 『병학지남』은 兵房, 將官廳, 軍器色, 外倉과 都訓導에 의해 보관되고 있으며, 여러 부서에서 활용하던 서책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13> 호남지역 郡·縣에 보관된 동일 서명의 서책 현황

번호	書名	번호	書名	번호	書名
1	勘亂錄	32	孟子大全	63	御製繪音
2	綱目	33	明義錄	64	御製常訓
3	擊蒙要訣	34	” 諺解	65	御製養老繪音
4	經國大典	35	無冤錄	66	呂氏鄉約
5	警民繪音	36	文廟配享錄	67	輿地勝覽
6	警民篇	37	兵將圖說	68	迎恩慶喜錄
7	經世指掌	38	兵學指南	69	禮記
8	戒酒繪音	39	史略	70	五禮儀
9	古文眞寶	40	三綱行實	71	五倫行實
10	高麗史	41	喪禮補篇	72	陸宣公奏議
11	攷事撮要	42	書傳	73	二倫行實
12	貢膳定例	43	” 諺解	74	字恤典則
13	救荒集	44	書傳大全	75	典錄通考
14	國朝寶鑑	45	” 諺解	76	精忠錄
15	近思錄	46	性理大全	77	朱書百選
16	金忠壯公遺事	47	小學	78	周易
17	論語	48	續大典	79	周易大全
18	” 諺解	49	續明義錄	80	” 諺解
19	論語大全	50	續自省篇	81	朱子大文
20	農家集	51	受教輯錄	82	朱子節要
21	當官功過格	52	夙興夜寐箴	83	中庸
22	大明律	53	詩傳	84	中庸大全
23	大典通編	54	詩傳大文	85	” 諺解
24	大典會通	55	詩傳大全	86	闡義昭鑑
25	大學	56	” 諺解	87	春秋
26	” 諺解	57	新增無冤錄	88	通鑑
27	大學大文	58	雅頌	89	河西集
28	” 諺解	59	養正圖	90	鄉禮合篇
29	杜詩	60	兩賢傳心錄	91	鄉約集
30	儷文程選	61	御製龜鑑	92	皇明史略
31	類苑叢寶	62	御製大訓	93	欽恤典則

## 5. 맺음말

현존하는 중기는 대부분 조선후기에 작성된 것이며, 중기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도 서책과 문서 등의 기록물은 수령의 지방통치와 교육 및 교화 등에 대해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에 중기의 현존본을 수집하여 그 중에서도 인쇄와 출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호남지역을 대상으로 군·현에서 작성된 중기의 기술체제와 중기에 수록된 서책, 문서, 책판의 종수 그리고 유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남지역에서 작성된 중기는 全羅監營(8종), 全羅左水營(2종), 府·牧(4종), 郡·縣(7종), 驛(1종)에서 총 22종이 확인되었다. 이중 군과 현에서 작성된 『順天郡各掌重記』, 『任實縣重記冊』, 『同福縣各庫物種重記』, 『光陽縣各房都重記』, 『高山縣都重記』, 『長水縣重記』에는 서책 550종, 문서 293종, 책판 3종이 수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군·현에서 작성된 중기의 기술체제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 하위항목을 1~2字 아래에 기입하고 있으며, 기록물의 수량 아래에 상태나 이동 등의 변동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또 기록물이 加入된 시기와 상태가 동일한 경우에는 물품명 아래에 가로줄을 긋고 해당 내용을 아래에 기입하고 있다. 물품의 수량 단위로 서책은 ‘卷, 坐, 秩, 冊, 件’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문서는 ‘件, 張, 軸, 卷, 封’으로 책판은 ‘立’이나 ‘介’로 기입되어 있다.

셋째, 중기의 기술체제는 각 중기별로 하위항목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임실현중기책』과 『고산현도중기』는 부서명인 ‘○○色’이나 ‘○○房’이 하위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임실현중기책』의 경우 부서명 아래에 담당자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외의 5종의 중기는 모두 부서명을 하위항목으로 두고 있다.

넷째, 각 기록물을 유별로 비교해보면 군·현에 보관되어 있는 서책은 經書類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正法類, 儒家類, 文集類, 詔令類 순으로 나타났다. 문서는 호구장적이 대부분이며, 量案, 節目, 官案이 보관되어 있다. 『고산현도중기』에는 3종의 책판이 수록되었으며, 문집류 2종과 『輿地勝覽』이 고산현의 관아

에 보관되어 있었다.

다섯째, 중기에 수록된 서책 중에서 동일한 서명을 가진 서책의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經國大典』, 『經世指掌』, 『當官功過格』, 『雅頌』, 『朱書百選』의 93종으로 나타났다. 이들 서책을 類別로 분석해 보면 經書類 25종, 正法類 16종, 儒家類 14종, 詔令類 9종, 傳記類 5종 등이며, 임실, 순천, 동북, 광양, 고산, 장수에 공통적으로 비치된 서책은 『小學』과 『欽恤典則』으로 나타났다. 『소학』은 鄉校나 禮房, 『흠휼전칙』은 刑房에 비치되어 필수 지침서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19세기 후반 호남지역의 군과 현에 보관되고 있었던 서책, 문서, 책판의 종수와 유형을 파악할 수 있으며, 호남지역에 파견된 수령들이 수령으로서 七事를 수행하고 관할지역을 통치하는데 활용했던 서책의 유형이 가시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기 연구에 있어서 외연의 폭을 넓히는데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현존하는 중기 자료에 수록된 기록물 분석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호남, 경기, 충청, 경상, 강원 등 지역 간의 기록물 유형 분석 등 체계적으로 종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강원감영, 김성찬 외. 『東營重記 上·下』. 원주: 원주시, 2012.
- 광주부, 김인규 외. 『남한산성 사료총서: 역주 남한수어영중기』 제3·4권. 광주: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 2013.
- 국립광주박물관. 『光陽』. 광주: 국립광주박물관, 2011.
- 국립전주박물관. 『장수長水, 역사의 물길』. 서울: 통천문화사, 2010.
- 국민대학교 박물관. 『오백년 전 관청이야기』. 서울: 국민대학교 박물관, 2005.
- 權俊杓. 『地方組織의 變遷』. [不明], 2000.
- 김덕진. 『朝鮮後期 經濟史研究』. 서울: 선인, 2002.

- 김혁 외. 『수령의 사생활』.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0.
- 노혜경. 『朝鮮後期 守令 行政의 實際; 黃胤錫의 『頤齋亂藁를 중심으로』』. 서울: 혜안. 2006.
- 변주승. 『여지도서 전라도』 1·2·3·4. 전주: 흐름, 2009.
- 서울대학교 규장각. 『全羅道邑誌』. 서울: 서울대학교, 2004-2007.
- 수원부, 김충영 외. 『華營重記』. 수원: 수원시, 2008.
- 순천대학교 박물관. 『順天市の 文化遺蹟』. 순천: 순천대학교 박물관, 1992.
- 영남문화연구원. 『重記』 I.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9.
- 임용한. 『朝鮮前期 守令制와 地方統治』. 서울: 혜안, 2002.
- 장세경. 『이두자료 읽기 사전』.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
- 장수문화원. 『장수의 옛 읍지』. 전북: 수미산, 2000.
- 조원래, 순천향교. 『順天鄉校史』. 순천: 순천향교, 2000.

## [논문]

- 강혜영. “朝鮮朝 全州地方의 木版印刷文化考.” 『國會圖書館報』 20권 6호(1983). 47-59.
- 김덕진. “『光州牧重記』 解題.” 『湖南文化研究』 제21집(1992). 187-193.
- 김문경. “邑誌로 본 朝鮮後期 寺刹 製紙의 實狀.”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2.
- 김혁. “古文書用語 풀이-重記.” 『古文書研究』 제19호(2001). 157-163.
- 남권희. “조선후기 전라도 임실현 <중기>에 수록된 기록자료 분석.” 『書誌學研究』 第57輯(2014). 5-50.
- 남권희. “慶尙道 安陰縣의 『丁卯十一月日 各項都重記』 分析.” 『嶺南學』 제21호(2012). 203-255.
- 남권희. “<三五庫重記>로 본 箕營의 출판문화.” 『인쇄술과 역사발전』(2012). 341-379.
- 남권희. “韓國 出版文化史에 있어서 完板本の 위상.” 『완판본과 전주의 기록문화

- 학술대회 발표문』(2011).
- 남권희. “重記資料 分析에 의한 朝鮮時代 地方 官衙의 記錄管理.” 『社會科學』 제14집(2002). 1-43.
- 남권희, 진유라, 강유현. “조선후기 동래부의 『萊府重記』에 수록된 기록물 분석.” 『書誌學研究』 第60輯(2014). 245-286.
- 박원택. “朝鮮時代의 會計制度로서의 解由의 要件과 解由規則.” 『安東大學 論文集』 第8輯(1986). 425-438.
- 박원택. “朝鮮朝의 官廳會計-重記와 解由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1987.
- 박진철. “1693년 『重記』를 통해 본 全羅道 羅州 牧의 軍備 實態.” 『東國史學』 제46집(2009). 1-32.
- 시귀선. “古文獻에 보이는 ‘等內’의 用例에 대하여.” 『전주사학』 제4권(1996). 215-232.
- 옥영정. “조선시대 完營의 인쇄문화에 대한 고찰.” 『書誌學研究』 第50輯(2011). 433-470.
- 유기석. “湖南地域 典籍文化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1990.
- 이한희. “조선시대와 현행 기록물관리제도의 비교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7.
- 鄭求福. “고문서 용어풀이-解由文書.” 『古文書研究』 제40호(2012). 213-233.
- 조미은. “19세기 解由文書와 重記에 관한 사례연구.” 『古文書研究』 제40호(2012). 179-212.